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제 17 차 정기총회

- 일 정 : 2022년 2월 22일(화) 16시
- 방 식 : 구글 폼(안건심의)
유튜브생중계(전체진행)
- 주 관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목 차

I. 전차회의록	3
II. 보고사항	
- 감사보고	9
III. 부의안심의	
1. 2021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서	13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22
3. 임원선출	28
IV. 부 록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31
- 회원 명부	56

I . 전차회의록

제 16 차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1. 02. 23.(화) 10:00 - 18:00

2. 회의방식 : 영상시청 및 온라인 투표

3. 재적회원 : 총 362명

4. 참여인원 : 협의회 이사 및 회원 255명 참여 (온라인 투표 참여인원)

5. 의안

-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서
-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제3호 의안 : 임원선출

6. 회의내용 (영상)

- 최종복 회장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제16차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하며 전차회의록, 감사보고, 부의안심의 순으로 본 회의가 진행된다고 말하다.

- 최종복 회장이 자료집 15~33p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0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심의,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제3호 의안 임원선출(선출직이사 2인, 감사 2인)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선출직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김정은 이사와 이한형 이사의 사임으로 2인의 결원이 발생, 정관 임원규정 제5조 이사선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15일 전까지 이사 선출방법을 공고한다.’에 의거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비선출직이사 모집의 기간을 주었고 2인 후보로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이효민 관장님, 은가람 빌 김은희 원장님이 등록되었다고 설명하다. 선출직 이사 임기는 기존 이사님들의 잔여임기인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로 1년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사 2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하다.

- 최종복 회장이 추가로 정관 ‘제5장 제34조 2항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에 의거하여 전문위원회인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김효진 위원장에서 김선영 위원장으로 변경되어 당연직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공표하다.

- 최종복 회장이 감사선출과 관련하여 정관 임원규정 제6조 감사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학무 변호사님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흥석 국장님이 연임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셨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이며 감사 2인에 찬반투표를 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최종복 회장이 부의안건은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개인회원들에게 투표링크를 발송하면 접속하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최종복 회장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재적회원은 362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총회 진행이 가능하며 투표에 참여한 회원을 총회 참석자로 보고 181명 과반수 투표 시 총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안내하다. 또한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인의 선출직이사와 2인의 감사는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득표가 이뤄지면 선출로 정한다고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정관에 의하면 임원규정 제5조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는 등록된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에 의거하여 2인 선출에 2인의 후보자 모두 전원 당선자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찬반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나눔 및 행사 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기프티콘이 발송되오니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2021년에 많은 분들의 소망대로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부천시 사회복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길 소망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계획과 목표를 토대로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7.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

○ 부의안건 심의

재적인원 : 362명 / 투표참여: 255명

1)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서

- 찬성 99.2% / 반대 0.8%

2)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찬성 99.2%/ 반대 0.8%

3) 제3호 의안 : 2021년도 임원선출

- **선출직이사 선출결과**

이사후보 1. 이효민 (부천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찬성 98%, 반대 2%

이사후보 2. 김은희 (은가람 빌 원장) - 찬성 90%, 반대 10%

선출직이사 2인 모두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선출됨.

- **감사 선출결과**

감사후보 1. 김학무 (법률사무소 부원 변호사) - 찬성 95.7%, 반대 4.3%

감사후보 2. 고흥석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찬성 94.3%, 반대 5.7%

감사후보 모두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선출됨.

-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

- 최종복 회장이 정관에 의거, 회의록을 점검하고 서명할 서명위원 5인을 사무국 이사진으로 회장을 비롯하여 이덕수, 조재일, 이지완, 박혜준 이사를 위촉한다고 선포하다.

- **폐회선언**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장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서명위원 5인이 다음에 서명하다.

2021년 02월 23일

이 사 장 께 종



서명인 이 사 이 덕 수



조 재 일



이 지 완



박 해 준



기

록

반

지

예



II. 보고사항

-감사보고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21. 01. 01.부터 2021. 12. 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일반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감 사 김 학 무

감 사 고 홍 석 (인)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최종복 귀하

III. 부의안심의

- 1. 2021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3. 임원선출**

1. 제1호 의안

2021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1) 2021년 사업결과보고

● 사회복지향상 환경개선과 개발

사 업 분 류	목 표	실 적 (명, 건수)	사 업 결 과
조사 연구사업	연1회 사회복지관련 이슈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사업 진행	연중	사회복지 정책연구사업 진행 -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21년도는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정책연구 실행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와 과제” 연구 발간(2021.12.)

● 회원 기관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 업 분 류	목 표	실 적 (명, 건수)	사 업 결 과
총회개최	연1회 협의회 운영 사항 심의·의결	연1회 /255명	제16차 총회 개최(02.23)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255명 참석(재적 362명/ 투표참여 255명) - 정기총회 온라인 안내 영상 시청(개회선언, 전차회의록, 감사보고, 부의안 심의, 인사말) - 임원선출: 선출직이사 2인, 감사 2인 선출(온라인 투표로 진행) - 부의안심의: 20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이사회 개최	연6회(격월진행) 주요사업집행 논의 심의·의결	연6회 /50명	- 제50차(1.14.): 2021년 정기총회 관련 논의, 2021년 임원선출(선거) 관련 논 의, 2021년 정관개정 관련 논의,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안) 심의· 의결,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간사 복직 보고(육아휴직 종결), 2021 회비안내 - 제51차(4.13.):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의결, 2021년 민·관 협력사업 관련 논의,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 회 법인운영 및 정관개정 관련 논의, ‘집객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를 준비 하는 사람들,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 사망사건대책연대 관련 논의, 신세계 프라퍼티 후원관련 논의, 회원 현황보고, 제16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 임시이사회(6.30.): 2021년 정관개정(안) 및 운영규정 심의·의결 - 제52차(8.20.): 2020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논의, 업무협약 및 후원관련 보고 - 제53차(10.22.):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관련 보고, 2021년 부 천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관련 보고, 회원 현황보고, 하반기 주요 사업 안내 - 제54차(12.17.):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사회복지정보센터 1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2022년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안), 2022년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안) 심의·의 결, 제17차 정기총회 논의
민·관 합동 문화나눔 행사	연1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문화나눔행사 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미진행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연1회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및 화합의 장	연1회 /657명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 - 온라인 기념식: 영상시청,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참여, 유공자 표창, 20년 장기 근무자 시상 - 비대면 걷기대회: 기관별로 인원을 나누어 부천시역 내에 소개하고 싶은 명소 방문 후 영상 또는 사진 인증
부천시 재가복지 연합회	부천시 재가복지연합회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도모	연12회 /121명	21년 유관기관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관련 일정공유 및 이사회 공지사항 안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진행 여부 및 부재연 방향성 논의, 부재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과 회의 참석의 이유 논의, 김장김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수혜자 명단공유 등, 21년 사업 및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변경
부천시 지역사회 조직연합회	지역사회조직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연11회 /140명	기관별 조직사업 공유, 공동사업 진행 논의, 부천시 지역조직화기능 담당자 교육 진행 논의, 부천시 지역조직화기능 담당자 교육 진행, 기관별 사례발표를 통한 사례공유 교육, 정기총회
기관장 협의회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논의,정보공유 역량강화 연수 진행	연1회 /18명	- 제1차(12.20.): Zoom 온라인회의 진행,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보고, 2022년 제17차 정기총회 안내,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이사, 본과위 당연직이사 등 변경 안내, 연말 인사
실무책임자 연합회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 정보공유 및 문화나눔행사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정책위원회	부천시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교육학술 위원회	다양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연0회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대외협력 위원회	부천 지역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사회복지의 날 행사준비 및 진행 /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연7회 /43명	-1차 회의(7.23 zoom):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온라인 기념식 및 비대면 걷기대회' 준비 모임 진행 -2차 회의(8.3 zoom):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온라인 기념식 및 비대면 걷기대회' 준비 모임 진행 -3차 회의(8.25) : 영상제작 업체 회의 -영상촬영 (8.3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온라인 기념식 및 비대면 걷기대회' 사전 영상 촬영 -행사 진행(9.7) : 2021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온라인 기념식 진행 (최대동시 시청자수 200명) -저소득층 어린이대상 영화관람(9.9) : 스타필드 지원 (영화 관람 및 애슬리 식사권 증정 - 인솔교사 3인, 아동 9명 총 12명) -4차 회의(9.28): 걷기대회 사진공모전 심사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협의회 회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연0회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종사자 역량강화

사 업 분 류	목 표	실 적 (명,건,회)	사 업 평 가
교육 사업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교육 네트워크 단체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공모방식의 사업비 지원	연중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종사자 해외연수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지원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 업 분 류	목 표	실 적 (명,건,회)	사 업 평 가
종합정보망 사업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연중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welinfo)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웰인포 홈페이지 개편(협의회 안내 및 킷메뉴 추가)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등록 - 인포레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입력
홍보사업	홍보 물품 제작 및 welinfo 활용도 증가	연1회 /406개	- 사회복지정보센터 장우산 홍보물품 제작 - 지역주민 및 기관에 배포하여 홍보
사회복지 서비스정책 안내 교육	정책안내 및 교육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기타사업

사 업 분 류	목 표	실 적 (명,건,회)	사 업 평 가
VMS사업	연1회 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VMS교육	연0회/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	연중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 각 행사 소식 및 결산 예산보고, 채용공고, 복지정보 등 공지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등록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 총괄표

세출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증감(B)-(A)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증감(B)-(A)			
			(A)	(B)	(A)	(B)	액수	비율(%)				(A)	(B)	액수	비율(%)				
사업수입	총계	소계	136,859,313	136,576,240	-	0.21	총계	소계	136,859,313	136,576,240	-	0.21	총계	소계	136,576,240	11,273,920	-	4.27	
	사업수입	회비수입	21,070,000	20,770,000	-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500,000	334,000	-	33.20	기관운영비	334,000	-	33.20	-	
		일반사업수입	-	-	-	회비수입			21,070,000	20,770,000	-	1.42	직책보조비	9,600,000	9,600,000	-	-	-	-
		소계	35,000,000	35,005,029	5,029	0.01			소계	1,552,500	1,357,360	-	12.57	회의비	1,676,320	1,339,920	-	20.07	-
경상보조금수입	소계	35,000,000	35,005,029	5,029	0.01	재산조정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152,500	1,152,500	-	-	제세공과금	1,152,500	-	-	-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5,029	5,029	0.01			수용비 및 수수료	400,000	204,860	-	48.79	수용비 및 수수료	400,000	204,860	-	48.79	-	
	소계	41,500,000	41,500,000	-	-			소계	150,900	150,900	-	-	소계	150,900	150,900	-	-	-	
	지정후원금	41,500,000	41,500,000	-	-			자산취득비	150,900	150,900	-	-	자산취득비	150,900	150,900	-	-	-	
후원금수입	소계	41,500,000	41,500,000	-	-	일반사업비	일반사업비	사회복지의날행사	4,686,120	4,686,120	-	-	소계	90,582,920	90,575,000	-	0.01	-	
	지정후원금	41,500,000	41,500,000	-	-			민관합동체육문화나눔행사	-	-	-	민관합동체육문화나눔행사	-	-	-	-	-	-	
	소계	39,249,313	39,249,313	-	-			해외연수	-	-	-	해외연수	-	-	-	-	-	-	
	전년도이월금	39,249,313	39,249,313	-	-			조사연구사업	800,000	800,000	-	-	조사연구사업	800,000	800,000	-	-	-	
이월금	소계	39,249,313	39,249,313	-	-	일반사업비	일반사업비	부채환상사업	-	-	-	-	부채환상사업	-	-	-	-	-	
	전년도이월금	39,249,313	39,249,313	-	-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	-	-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	-	-	-	-	-	
	소계	39,249,313	39,249,313	-	-			기관장협의회사업	-	-	-	기관장협의회사업	-	-	-	-	-	-	
	전년도이월금	39,249,313	39,249,313	-	-			정책위원회사업	-	-	-	정책위원회사업	-	-	-	-	-	-	
점수입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예비비	예비비	교육학술위원회사업	96,800	96,800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96,800	96,800	-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대외협력위원회사업	-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	-	-	-	-	-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부지연사업	-	-	-	부지연사업	-	-	-	-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동아리지원및문화활동지원사업	-	-	-	동아리지원및문화활동지원사업	-	-	-	-	-	-	
점수입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예비비	예비비	기타지정후원사업	50,000,000	50,000,000	-	-	기타지정후원사업	50,000,000	50,000,000	-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	-	-	-	-	-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교육네트워킹단체활성화사업	-	-	-	교육네트워킹단체활성화사업	-	-	-	-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실무자역량강화사업	-	-	-	실무자역량강화사업	-	-	-	-	-	-	
점수입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예비비	예비비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35,000,000	34,992,080	-	0.02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34,992,080	-	0.02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소계	32,796,673	249,500	-	99.24	소계	32,547,173	-	99.24	-	-	
	소계	40,000	51,898	11,898	29.75			예비비	32,796,673	249,500	-	99.24	예비비	32,547,173	-	99.24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차기이월금	-	32,969,560	32,969,560	-	-	차기이월금	32,969,560	-	-	-	-

(2) 세입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증감(B)-(A)		2021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총 합 계			136,859,313	136,576,240	-	283,073	-	0.21	
사업수입	수익사업	소 계	21,070,000	20,770,000	-	300,000	-	1.42	
		회비수입	21,070,000	20,770,000	-	300,000	-	1.42	
		일반사업수입	-	-	-	-	-	-	
	수익사업	회비수입	21,070,000	20,770,000	-	300,000	-	1.42	
		개인회비						10,320,000 원	
		단체회비						9,900,000 원	
		이사회비						550,000 원	
		계						20,770,000 원	
		사회복지의날행사참가비						- 원	
		기관장협의회워크숍 참가비						- 원	
수익사업	실무자연합회워크숍참가비						- 원		
	교육학술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대외협력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정책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부재련워크숍참가비						- 원		
	부지연워크숍참가비						- 원		
	해외연수참가비						- 원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35,000,000	35,005,029	5,029	0.01		35,000,000 원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5,029	5,029	0.01		5,029 원		
	소 계	41,500,000	41,500,000	-	-		35,005,029 원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41,500,000	41,500,000	-	-				
	소 계	39,249,313	39,249,313	-	-		41,500,000 원		
이월금	이월금	39,249,313	39,249,313	-	-				
	전년도이월금	39,249,313	39,249,313	-	-		30,410,867 원		
접수입	접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8,838,446 원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51,898	11,898	29.75		39,249,313 원		
계								계	51,898 원
계								계	51,898 원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증감(B)-(A)		2021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사무비	총 합 계	소 계	136,859,313	136,576,240	-	283,073	-	0.21		
		기관운영비	11,776,320	11,273,920	-	502,400	-	4.27		
		직원보조비	500,000	334,000	-	166,000	-	33.20	기관운영비	334,000 원
	업무추진비	직원보조비	9,600,000	9,600,000	-	-	-	-	회장활동비 사무처장활동비 활동비	3,600,000 원 3,600,000 원 2,400,000 원
		회의비	1,676,320	1,339,920	-	336,400	-	20.07	이사회 및 회의비 정기총회	363,600 원 976,320 원
		소 계	1,552,500	1,357,360	-	195,140	-	12.57	계	1,339,920 원
	운영비	제세공과금	1,152,500	1,152,500	-	-	-	-	제세공과금	1,152,500 원
		수용비및수수료	400,000	204,860	-	195,140	-	48.79	수용비 및 수수료	204,860 원
	시설비	소 계	150,900	150,900	-	-	-	-	계	150,900 원
		자산취득비	150,900	150,900	-	-	-	-	사무용 비품구입	150,900 원
재산조정비	소 계	소 계	90,582,920	90,575,000	-	7,920	-	0.01		
		사회복지의날행사	4,686,120	4,686,120	-	-	-	-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원금	4,686,120 원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	-	-	-	-	-	체육문화나눔행사	- 원
		해외연수	-	-	-	-	-	-	해외연수비용	- 원
		조사연구사업	800,000	800,000	-	-	-	-	조사연구사업	800,000 원
		부재려사업	-	-	-	-	-	-	부재려사업	- 원
		실무책임자연합회	-	-	-	-	-	-	실무책임자연합회	- 원
		기관장협의회 사업	-	-	-	-	-	-	기관장협의회사업	- 원
		정책위원회사업	-	-	-	-	-	-	정책위원회사업	- 원
		교육학술위원회사업	-	-	-	-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 원
		대외협력위원회사업	96,800	96,800	-	-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96,800 원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증감(B)-(A)		2021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일반사업비	부지연사업	부지연사업	-	-	-	-	부지연사업 계 - 원	
		동아리지원및 문화활동지원사업	-	-	-	-	동아리지원및 문화활동지원사업 계 - 원	
		기타지정 후원사업	50,000,000	50,000,000	-	-	기타지정 후원사업 계 50,000,000 원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계 - 원	
		교육네트워킹단체 활성화사업	-	-			교육네트워킹단체 활성화사업 계 - 원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	-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계 - 원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35,000,000	34,992,080	7,920	0.02	급여 24,000,000 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2,000,000 원
								사회보험료 2,651,200 원
								수용비 및 수수료 933,330 원
여비 100,000 원								
세세공과금 - 원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관리 900,000 원								
공공요금 409,550 원								
사회복지종합정보 구축망사업 1,000,000 원								
정보센터운영사업 홍보사업 2,998,000 원								
사회복지정보안내 및 교육 - 원								
예비비	소 계	32,796,673	249,500	-	32,547,173	- 99.24	계 34,992,080 원	
	예비비	32,796,673	249,500	-	32,547,173	- 99.24	예비비 계 249,500 원	
	소 계	-	32,969,560		32,969,560	-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	32,969,560	32,969,560	-	회비수입 이월금 32,598,631 원	
							후원금 이월금 357,980 원	
							반환금(보조금 및 예금이자) 12,949 원	
						계	계 32,969,560 원	

2021년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

◎ 기 간 : 2021년 1월 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 월 일	후원금의 종류	후 원 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50,357,980	
2021.01.01	2020년 이월금	-	-	8,838,446	
2021.03.31	지정후원금	신세계프라퍼티(부천점)		5,000,000	
2021.04.30	지정후원금	신세계프라퍼티(부천점)		36,500,000	
2021.06.27	예금이자	-	-	9,488	
2021.12.25	예금이자	-	-	10,046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 번	발생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량 /단위	상당금액
1	2021.02.26	지역사회 후원금품	(주)이솔산업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100,000 장	15,000,000
2	2021.05.25 ~ 07.07	지역사회 후원금품	기아오토큐 중동점	차량수리	엔진, 브레이크오일, 필터교체	20대	4,000,000
3	2021.09.15	지역사회 후원금품	신세계 프라퍼티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500장	25,000,000
4	2021.09.16	지역사회 후원금품	주식회사 싸파에프앤씨	보건용품	덴탈마스크, 체온계	58,775장, 30개	9,475,000
5	2021.9.28. ~12.31	지역사회 후원금품	인스하이(주)	전기공사	조명기기, 스탠드 등	341개	8,009,650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사용 일자	사용 내역	금 액	산출 기준	비 고
계		50,357,980		
2021.05.24 ~ 07.01	중장년층 고독사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비	5,000,000	250,000원 × 20명	신세계 프라퍼티
2021.09.29 ~ 09.30	시장대면개선사업	45,000,000	4개 시장(한신시장, 상암시장, 조공시장, 소사시장) 수리지원	신세계 프라퍼티
2021.12.31	차기이월금	357,980		

4. 후원금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 고
1	2021.02.26	마스크	32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100,000장	15,000,000	
2	2021.05.25 ~ 07.07	차량수리	26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20대	4,000,000	
3	2021.09.15	온누리상품권	4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2,500장	25,000,000	
4	2021.09.16	보건용품	21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58,775장 /30개	9,475,000	
5	2021.9.28. ~ 12.31	전기공사	8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341개	8,009,650	LED 36w 유백스틸 외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NH농협은행	383-01-009677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NH농협은행	301-0285-8662-91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2. 제2호 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1) 2022년 사업계획

● 사회복지향상 환경개선과 개발

사 업 분 류	목 표	사 업 내 용	비고
조사연구사업	연중	지역사회 공동주제 관련된 연구사업 진행(사회복지아젠다 및 정책개발 사업) - 6/1 지방선거관련 시장후보자 정책토론회	

● 회원 기관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 업 분 류	목 표	사 업 내 용	비고
총회	연1회	협의회 운영 사항 심의·의결, 20년 장기종사자 감사패수여	2월
이사회	연6회 (격월진행)	주요사업집행 논의 심의·의결	
민·관 합동 문화나눔행사	연1회	민·관 네트워크 향상과 유대강화, 종사자 힐링 기회 마련을 위한 문화나눔행사 진행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연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자표창 종사자 힐링 및 단합기회 제공을 위한 기념식 및 워크숍 진행	9월
기관장협의회	연6회 (격월진행)	기관장 중심의 부천시 사회복지 정책 논의 및 정보공유, 역량강화 연수 진행	
실무책임자연합회	연중	부장단 중심의 정보공유 및 연계, 문화나눔행사진행	
정책위원회	연중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아젠다 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교육학술위원회	연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교육 및 학습,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진행	
대외협력위원회	연중	부천 지역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진행,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연12회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의 방향성 모색,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도모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	연12회	지역사회조직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예비 사회복지사(조직가) 양성 및 지역주민조직 활성화 도모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연중 4개 단체	협의회 회원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	
지역네트워크 연합사업	연6회	부천 3개 단체(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 연계 협력 및 정보공유(대표단, 실무자 정례회의)	

● 종사자 역량강화

사 업 분 류	목 표	사 업 내 용	비고
교육사업	연중	복지 정책 안내 및 지역의 교육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진행	
교육네트워크 단체활성화 사업	연중 4개 단체	사회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공모방식의 사업비 지원	
실무자 연수	연1회	코로나 상황으로 기존 해외연수를 대신하여 종사자들에게 쉼과 회복을 위한 국내연수 기회 제공(단, 코로나 상황이 변화하면 상황에 맞춰 해외연수 추진 검토)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 업 분 류	목 표	사 업 내 용	비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사업	연중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웹인포) 운영 및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사업	연중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웹인포) 홍보물 제작 및 배분	
사회복지정보 안내 및 교육	연중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안내 및 지역내 홍보기구(웹인포) 활용을 위한 교육 : 복지관련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인포 홈페이지 소개 및 매뉴얼 교육 진행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모니터링	연중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현황 파악과 실적입력 및 관리규정 준수사항 점검, 수행결과 시도에 보고	
지역사회봉사단	연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봉사단 모집 및 위촉, 지역사회에 수요처에 맞는 봉사활동 연계 및 봉사단 관리	

● 기타사업

사 업 분 류	목 표	사 업 내 용	비고
VMS사업	연1회	자원봉사활동 인증 시스템 사용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 관리 체계화 도모	
후원사업	연중	지역 내 복지기관에 후원물품 배분을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차추경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 총괄표

세입			세출			
관	항	목	2022년 예산	2022년 1차추경	증감(B)-(A)	
			(A)	(B)		액수
총 계	총 계		205,436,673	205,609,560	172,887	0.08
	사업수입	소 계	55,600,000	55,600,000	-	-
회비수입		22,300,000	22,300,000	-	-	
일반사업수입		33,300,000	33,300,000	-	-	
소 계		42,000,000	42,000,000	-	-	
경상보조금수입		42,000,000	42,000,000	-	-	
소 계		75,000,000	75,000,000	-	-	
지정후원금		75,000,000	75,000,000	-	-	
소 계		32,796,673	32,969,560	172,887	0.53	
전년도이월금		32,796,673	32,969,560	172,887	0.53	
소 계		40,000	40,000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40,000	-	-		
합계	합계		205,436,673	205,609,560	172,887	0.08
사무비	업무추진비	소 계	12,700,000	12,700,000	-	-
		기관운영비	1,200,000	1,200,000	-	-
		지책보조비	7,200,000	7,200,000	-	-
	회의비	소 계	4,300,000	4,300,000	-	-
		소 계	1,500,000	1,500,000	-	-
		제세공과금	500,000	50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소 계	1,000,000	1,000,000	-	-
		소 계	1,000,000	1,000,000	-	-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	-
	소 계	167,500,000	167,500,000	-	-	
일반사업비	사회복지의날행사	소 계	14,500,000	14,500,000	-	-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1,000,000	1,000,000	-	-
		실무자연수	22,000,000	22,000,000	-	-
	조사연구사업	소 계	1,000,000	1,000,000	-	-
		부재련사업	1,000,000	1,000,000	-	-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1,000,000	1,000,000	-	-
	기관장협의회사업	소 계	1,000,000	1,000,000	-	-
		정책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소 계	1,000,000	1,000,000	-	-
부지연사업		1,000,000	1,000,000	-	-	
동아리지원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1,000,000	1,000,000	-	-	
기타지정후원사업	기타지정후원사업	소 계	75,000,000	75,000,000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400,000	400,000	-	-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2,000,000	2,000,000	-	-
	실무자역량강화사업	소 계	1,600,000	1,600,000	-	-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42,000,000	42,000,000	-	-
		소 계	22,736,673	22,909,560	172,887	0.76
	예비비	예비비	22,736,673	22,896,611	159,938	0.70
		반환금	-	12,949	12,949	0.06

(2) 세입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2년 예산 (A)		2022년 1차추경 (B)		증감(B)-(A)		2022년 1차추경 산출내역
							액수	비율(%)	
총 합 계			205,436,673	205,609,560	172,887	0.08			
사업수입	사업수입	소 계	55,600,000	55,600,000	-	-		개인회비 (380*30,000원) 단체 회비(28단체*300,000원 / 13단체*150,000) 이사회비(11명*50,000원) 계 11,400,000 원 10,350,000 원 550,000 원 22,300,000 원	
		회비 수입	22,300,000	22,300,000	-	-		사회복지의 날행사참가비(4만5천*300명) 기관장협의회 워크숍 참가비(3만원*15명) 실무자연합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교육학술위원회 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대외협력위원회 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정책위원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부재련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부지연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실무자연수참가비(80만원*20명) 인중오원양성교육 참가비(2만원*20명) 실무자역량강화교육참가비(5천원*50명) 계 13,500,000 원 450,000 원 450,000 원 450,000 원 450,000 원 450,000 원 450,000 원 16,000,000 원 400,000 원 250,000 원 33,300,000 원	
		일반사업수입	33,300,000	33,300,000	-	-			
		소 계	42,000,000	42,000,000	-	-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보조금 계 42,000,000 원	
		경상보조금수입	42,000,000	42,000,000	-	-			
		소 계	75,000,000	75,000,000	-	-		지정후원금 계 75,000,000 원	
		지정후원금	75,000,000	75,000,000	-	-			
		소 계	32,796,673	32,969,560	172,887	0.53	전년도이월금 - 사업수입이월금 - 후원금이월금 - 보조금반환금(인건비 및 예금이자) 계 32,608,677 원 347,934 원 12,949 원 32,969,560 원		
		전년도이월금	32,796,673	32,969,560	172,887	0.53			
		소 계	40,000	40,000	-	-		예금이자 계 40,000 원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40,000	-	-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2년 예산		2022년 1차추경		증감(B)-(A)		2022년 1차추경 산출내역
			(A)	(B)	(B)	액수	비율(%)		
	총 합 계		205,436,673	205,609,560	172,887	0.08			
사무비	업무추진비	소 계	12,700,000	12,700,000	-	-			
		기관운영비	1,200,000	1,200,000	-	-		기관운영비 계 1,200,000 원	
		직책보조비	7,200,000	7,200,000	-	-		회장활동비 3,600,000 원 사무차장활동비 3,600,000 원 활동비 - 원	
		회의비	4,300,000	4,300,000	-	-		이사회 및 회의비 1,000,000 원 정기총회 3,300,000 원	
		소 계	1,500,000	1,500,000	-	-		계 4,300,000 원	
		제세공과금	500,000	500,000	-	-		계의회비(연회비) 계 500,000 원	
		수용비및수수료	1,000,000	1,00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계 1,000,000 원	
		소 계	1,000,000	1,000,000	-	-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	-		사무용 비품구입 계 1,000,000 원	
		소 계	167,500,000	167,500,000	-	-			
재산조정비		사회복지의날행사	14,500,000	14,500,000	-	-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계 14,500,000 원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1,000,000	1,000,000	-	-		체육문화나눔행사 계 1,000,000 원	
		실무자연수	22,000,000	22,000,000	-	-		실무자연수비용 계 22,000,000 원	
		조사연구사업	1,000,000	1,000,000	-	-		조사연구사업 계 1,000,000 원	
		부재련사업	1,000,000	1,000,000	-	-		부재련사업 계 1,000,000 원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1,000,000	1,000,000	-	-		실무자연합회사업 계 1,000,000 원	
		기관장협의회 사업	1,000,000	1,000,000	-	-		기관장네트워크사업 계 1,000,000 원	
		정책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정책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교육학술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대외협력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관	항	목	2022년 예산		2022년 1차추경		증감(B)-(A)		2022년 1차추경 산출내역				
			(A)	(B)		(B)	액수	비율(%)					
사업비	일반사업비	부지연사업	1,000,000	1,000,000	-	-	부지연사업	계	1,000,000 원				
		동아리지원및문화활동지원사업	1,000,000	1,000,000	-	-	동아리지원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계	1,000,000 원				
		기타지정후원사업	75,000,000	75,000,000	-	-	기타지정후원사업	계	75,000,000 원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400,000	400,000	-	-	VMS 교육	계	400,000 원				
		교육네트워크단체활성화사업	2,000,000	2,000,000	-	-	교육네트워크단체 활성화사업	계	2,000,000 원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1,600,000	1,600,000	-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계	1,600,000 원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42,000,000	42,000,000	-	-	인건비	급여	27,600,000 원				
								퇴직적립금	2,367,500 원				
								사회보험료	3,039,360 원				
								제수당	810,200 원				
								수용비 및 수수료	2,582,940 원				
							운영비	-	-	-	-	여비	500,000 원
												제세공과금	100,000 원
												사회복지종합정보관리	900,000 원
												공공요금	600,000 원
												사회복지종합정보 구축망사업	1,000,000 원
정보센터운영사업	-	-	-	-	홍보사업	1,500,000 원							
					사회복지 정보 안내 및 교육	1,000,000 원							
					계	42,000,000 원							
예비비	소 계	22,736,673	22,909,560	172,887	0.76								
	예비비	22,736,673	22,896,611	159,938	0.70	예비비	계	22,896,611 원					
	반환금	-	12,949	12,949	0.06	보조금잔액 및 예금이자	계	12,949 원					

3. 제3호 의안

-임원선출

◆ 회장 후보명단 [임기: 2022.02 ~ 2025.02]

연번	분 과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회장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최 종 복	연임

◆ 선출직이사 후보명단 [임기: 2022.02 ~ 2025.02]

연번	분 과	소속 기관	직 책	성 명	비 고
1	선출직 이사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원 장	김 경 희	연임
2	선출직 이사	은가람 빌	원 장	김 은 희	연임
3	선출직 이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 장	이 효 민	연임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4조(회장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15일 전까지 이사선출방법을 공고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3. 후보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자로 하고, 2인이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원규정 제5조(이사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15일 전까지 이사선출방법을 공고한다.
2. 이사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3.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는 등록된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
4.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달된 정원만큼의 후보자를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람을 이사로 선출한다.

IV. 부 록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 개인 및 단체회원 명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 정: 2005년 6월 27일
제1차 개정: 2007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3년 1월 10일
제3차 개정: 2016년 1월 21일
제4차 개정: 2018년 2월 20일
제5차 개정: 2021년 7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부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제반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Bucheon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BC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에 둔다.<2021.7월개정>

제4조(사업) 이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부천시 소재 사업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9. 도지사 또는 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10.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11. 기타 이 회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도협의회와의 관계) 이회는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부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임직원 <2018.2월개정>
2. 부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2018.2월개정>
3. 부천지역의 경제·언론·종교·법조·문화·교육·보건의료·청소년 등의 시설 및 종사자<2018.2월개정>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7조(회원의 구분) ① 이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018.2월개정>

- ② 삭제 <2018.2월개정>
- ③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018.2월개정>
- ④ 단체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2018.2월신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2018.2월개정>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2018.2월개정>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18.2월개정>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및 복권) ①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018.2월개정>

② 이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③ 자격박탈 또는 제명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서 시행하며 이사회는 10일 전에 해당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된 회원이 미납부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복원하고자 신청할 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2018.2월신설>

제12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 회의 직제와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8.2월개정>

② 이사는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인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한다. <2016.1월개정>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 회의 이사장은 회장으로서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021.7월개정>

② 이 회의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중 1인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016.1월개정>

③ 부회장은 이사 중 2인을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의 지명과 해임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3.1월개정>

④ 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정관 제17조 임원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한다. <2021.7월신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013.1월개정>

② 당연직 이사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단 선출직이사, 감사는 총회를 통해서만 보궐 선출을 할 수 있다. <2021.7월개정>

③ (삭제) <2013.1월개정>

④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2018.2월개정>

⑤임원(회장,부회장,감사,이사)이 임기 중 결원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2018.2월신설>

제16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021.7월개정>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등) ① 임원이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2018.2월개정>

② 임원이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2018.2월개정>

③ 부천관내 근무기관을 퇴직하면 임원 자격은 상실한다. <2013.1월개정>

④ 임원이 임원회비 등의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한 때는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7조의 1(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013.1월신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

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3.1월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 1(임원의 겸직 금지) ① 삭제 <2018.2월개정>

② 삭제 <2018.2월개정>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취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0조(총회)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21.7월개정>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8.2월개정>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수는 1인에 한한다. <2018.2월개정>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원 및 위탁기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2개월 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021.7월신설>

제31조(서면결의 등) 삭제 <2013.1월개정>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삭제 <2021.7월개정>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2021.7월개정>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처

제34조(전문위원회) ①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단, 기관장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2013.1월개정>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18.2월개정>

제34의 1조(자문위원회)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7.6월신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18.2월개정>

③ 삭제 <2018.2월개정>

④ 삭제 <2018.2월개정>

제35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한다.

제36조(직원)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1절 자 산

제37조(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8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1.7월개정>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정부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0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021.7월개정>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위탁운영 및 수익사업

제45조(위탁운영) ① 이 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7월개정>

제46조(수익사업) ① 이 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7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공고방법

제50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지방지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1조(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

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왔던 각종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이 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운 영 규 정

제 정 : 2018년 2월 20일

제1차 개정 : 2021년 7월 7일

□ 목 차

1. 임원규정 (신설 2018. 2.)(개정 2021. 7.)
2. 직제규정 (신설 2018. 2.)(개정 2021. 7.)
3. 인사규정 (신설 2021. 7.)
4. 복무규정 (신설 2021. 7.)
5. 보수규정 (신설 2021. 7.)
6. 물품관리규정 (신설 2021. 7.)
7. 선거관리규정 (신설 2021. 7.)

<2021.7월개정>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이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2. 이회의 전문위원회는 기관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교육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실무책임자연합회,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로 구성한다.
3. 이회의 감사는 이사가 아닌 회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4. 선출된 회장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1. 기관장협의회는 단체회원의 대표단위로서 부천지역 사회복지관련 논의와 기관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정책위원회는 부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젠다발굴, 정책제안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교육학술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교육 및 회원들간의 학술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는 부천지역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실무책임자연합회는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련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한다.
6.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는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학습과 함께 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7.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는 지역사회조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학습과 함께 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이사의 정수와 선임방법)

1.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단, 기관장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이사로 임명한다.
2. 이회는 당연직 이사와 함께 3명 이내의 선출직 이사를 둔다. 선출직 이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5조(회비납부의무)

1. 이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임원의 개인적인 신분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비의 감면을 정할 수 있다.

2. 임원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 임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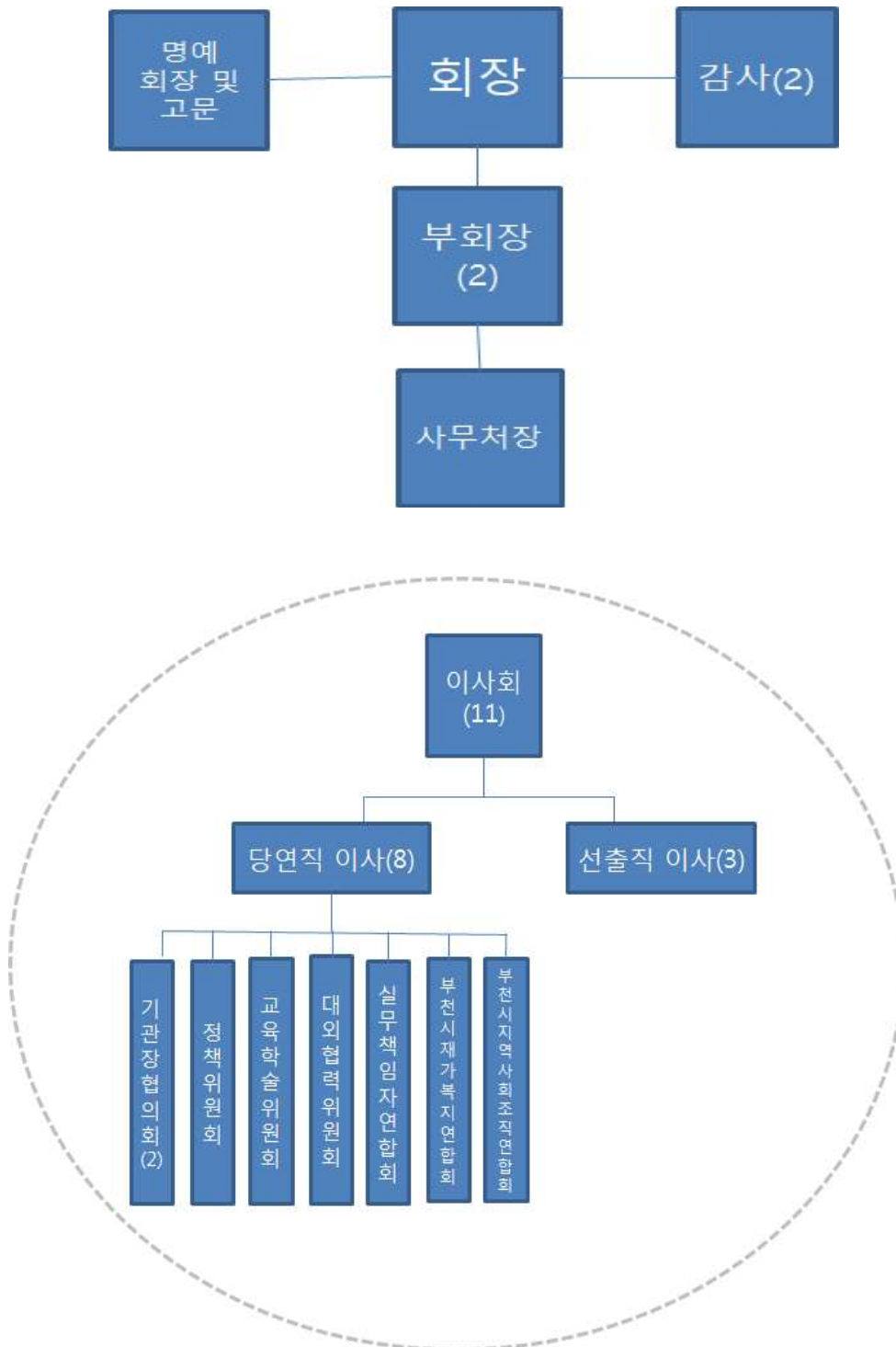
제6조(자문위원회)

1.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2018. 2. 20.)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2021.7월개정>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직제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구성) 이회는 회장(비상근) 1명, 사무처장(비상근) 1명, 간사(상근)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1. 이 회의 사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이 회의 회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업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분장)

1. 사회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회복지에 관한 기획업무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
4. 사회복지 기관간의 연락조정 및 업무협의 조정
5. 사회복지에 대한 각종 홍보출판과 관련된 사업
6.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7. 웰인포(WELINFO) 운영
8.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육성
9. 전문위원회 운영
10.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정책연구보고
11.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진행
12.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13. 사회복지 자원조성 및 육성
14. 지역네트워크 연합사업

부 칙 (2018. 2. 20.)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7월신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인사와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명직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난이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에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권은 회장에게 있다.

제5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 후 면접에 의한다.

제6조 (제출서류)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필요로 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관련 자격증사본 1부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군필자에 한함) 1통
5.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제7조 (특별승진)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보) 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1.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사유) 직원이 이 회의 정관이나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단,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소명절차를 가질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1조 (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징계, 승진,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구성)

1. 인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인사위원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1.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심의된 내용 중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1.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7월신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복무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정한다.

제3조(책임완수) 직원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직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성실의무)

1.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밀엄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 회의 회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

1.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3. 이 회의 회장은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1. 회장은 업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휴가의 종류)

1.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직원이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휴가 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가일수)

1.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결근일수는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한다.
4. 1년 미만 근속자는 및 1년간 80% 미만 근무자는 1개월간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이 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병가일수) ① 직원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병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유급으로 부여한다.

1. 병역관계에 의한 신체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 또는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 교육에 참가할 때

제17조(경조 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결혼
 - 가. 본인 5일
 - 나. 자녀 1일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출산(배우자) 유급 10일(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3. 사망
 - 가. 배우자 5일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일
 - 다. 자녀 5일
 - 라. 형제자매 1일

제18조(생리휴가) 여직원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및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 칙 (2021.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7월신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보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에는 봉급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기타 보수에 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다만, 상여금 및 기타 제수당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3/12을 산입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전액을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 퇴사 이전에 기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3/12을 산입한다.
6. “연봉”이라 함은 해당 직책과 직급 및 전년도 업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계약에 의하여 1년간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1. 보수는 연봉제로 산정하며, 보수지급은 월급으로 한다.
2.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급은 월액의 당해 총일수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시직에 있어서는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보수지급일 이후에 결근한 경우에는 익월분 보수에서 이를 감액한다.

제6조(봉급) 직원의 봉급은 매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 회의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수당)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효도수당, 기술자격소지자의 특수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출납수당, 민원수당, 전산수당, 복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타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이 회의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지급)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정년퇴직
2. 해직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퇴직연금지급액)

1. 협의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의 실비보상)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7월신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물품관리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물품이라 함은 이 회가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제3조(물품관리 업무위임) 이 회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을 둔다.

제4조(물품관리원)

1. 이 회는 간사는 물품관리원이 된다.
2. 물품관리원은 이 회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연1회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부)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2. 비품관리대장

제7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작성) 물품출납원은 중요물품에 대하여 증감현황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관리자의 책임)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정한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

부 칙 (2021.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 1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3명, 감사가 각 2인씩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추천할 회장과 감사가 결원일 경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감사는 다른 감사가 추천권을 대신 행사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관과 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 외의 선거절차와 방법의 결정
2. 선거의 공고와 공정관리
3. 회장 선거의 진행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4조(회장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선출이 필요하면 총회 15일전까지 선거방법을 공고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3. 후보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자로 하고, 2인이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이사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15일 전까지 이사선출방법을 공고한다.
2. 이사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3.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는 등록된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
4.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달된 정원만큼의 후보자를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람을 이사로 선출한다.

제6조(감사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의 채택여부를 우선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가결했다라도 총회의 직접추천으로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이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는 회원들의 직접 추천에 의해 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2021.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개인회원 (355명)

소속기관	총원	성명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18	박동옥, 최윤진, 손정민, 이한결, 우미현, 박상호, 김유림, 윤유희, 정도화, 전해원, 최은애, 홍선희, 이승곤, 이미선, 이정주, 박주원, 설미림, 전부남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16	송예순, 차진수, 안이숙, 송인재, 정세미, 윤경, 이병진, 장동규, 최태웅, 김광일, 김근영, 조남희, 김원철, 손혜준, 황예진, 김다예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21	박혜준, 최준기, 김명옥, 최선, 박은하, 김승준, 한민우, 박혜진, 김준경, 이성현, 박준수, 오도경, 임건우, 진경은, 김은선, 홍예은, 신주은, 안선미, 양승이, 이경향, 이승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이현주, 이예스더, 박혜경, 정준우, 이상덕, 신숙영, 안영순, 김민영
고강종합사회복지관	13	최종복, 이은선, 조희연, 강정식, 최상철, 서선희, 서재승, 김선영, 부민주, 전수정, 유동현, 최유찬, 윤정애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7	김병학, 조정현, 박인미, 임은경, 박상영, 이선주, 이문규
동광임파워먼트센터	8	김장배, 김다솔, 김유라, 조승리, 김지선, 이준별, 서진영, 이새봄
범안종합사회복지관	1	박현
대산종합사회복지관	12	차재경, 최은정, 백은유빈, 백민영, 오성림, 박원희, 이성현, 안다혜, 박수현, 성유정, 원은희, 장수진
부천노인복지센터	7	이종화, 이지애, 신정인, 박진희, 양은영, 한승아, 박근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6	권혁철, 손은정, 장은혜, 유성진, 안정호, 이승영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3	이승주, 임보혜, 정수민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10	정선미, 김선희, 김민영, 양미숙, 권미선, 고인선, 강명진, 김철호, 이영아, 권기덕
부천시노동복지회관	16	정명순, 김은희, 배지영, 배자영, 황희원, 김지은, 조계순, 김성숙, 탁은정, 임지애, 권영민, 박효정, 최윤미, 이유미, 김도연, 이병주
부천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9	권치영, 김미희, 김소미, 김현진, 최경희, 박형희, 손다연, 송희연, 박선교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	윤수빈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10	이덕수, 최종원, 이현아, 이영선, 강명은, 박현진, 김희경, 박효진, 박소연, 박순영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13	김봉준, 황성애, 두태우, 윤경미, 조희정, 김은주, 정현주, 김민교, 김상봉, 김선희, 장민희, 박정희, 김금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13	장기옥, 신병철, 김민옥, 김선희, 홍지영, 김주영, 김미정, 이장선, 김수정, 정지영, 이진아, 이선애, 김애영
부천시자원봉사센터	3	유연승, 임순진, 이민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9	이효민, 박상현, 변진희, 신창훈, 윤영주, 김현수, 정유리, 김순자, 김민진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	남권우, 이성진, 심소영, 광문희, 정영자, 이기훈, 신주연, 장경희, 신진희, 고흥석, 문주환, 김찬우, 김기원, 정경학, 김대규, 박주오, 김민정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25	김경희, 김춘식, 이은형, 이혜란, 김종옥, 조윤정, 유정숙, 김유화, 이창수, 김인경, 박성균, 김경희, 김명희, 마종열, 안현진, 조영희, 한매역, 김옥미, 최영신, 박희주, 최정인, 최향숙, 박은희, 이은실, 한희정
부천해림직업재활시설	1	권미영

부천희망재단	1	김범용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	조재일,고재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8	강미옥,이정수,박정아,윤소정,최인성,김소희,최보람,김빛나
상동종합사회복지관	16	정성기,김대조,황용민,정아영,정재경,지초룡,조우인,서연숙,강희복,이태호,정지민,김선하,강인실,김현빈,정의라,강새내
샘물자리	1	정현주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13	최영,박상미,김수정,정혜원,박선정,유하나,김수빈,손경임,임규희,윤소윤,권선웅,김양선,홍석준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9	이명위,권민혁,유향진,홍은경,강선영,이은주,임병현,전세정,공윤주
소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강영선,박정인,노연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19	채희성,이지완,이혜진,장윤희,이수준,박지현,이주연,안은빈,이성국,이혜경,서경석,이수정,김지윤,박진호,김재현,박은혜,김도연,이소연,최인애
오정종합사회복지관	7	천경희,정경자,박유미,홍성만,이희령,나현아,차재효
위드프렌즈	1	배영옥
은가람 빌	1	김은희
(주)나눔과돌봄	12	김경옥,박명숙,김오남,허분옥,김송희,유인애,유다연,김정숙,정한숙,이예진,조은영,임성숙
해밀도서관	15	이상희,이슬,송혜경,김진아,백인성,조혜영,김문정,이주연,김동환,이윤희,이다정,김소혜,김수빈,이정은,이병주

◆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

번호	기관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1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욱	부천시 경인로 224번길 36 3층	323-9946	323-9949	
2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	부천시 경인로 477 4층	349-2355	349-2356	
3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부천시 부흥로 303번길 8 청원프라자 403호	654-7399	654-7999	
4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부천시 심종로 68	683-1389	683-1388	
5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부천시 고리울로 79	677-9090	679-9707	
6	꿈나눔아동종합상담소	김병학	부천시 안곡로 194번길 14	347-7205	348-7206	
7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부천시 부일로 191번길 30 동성프라자701호	323-3206	323-3325	
8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재경	부천시 십곡로 9번길 54 5층	665-6061	665-6064	
9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현	부천시 범안로 129번길 17 범박주민지원센터 2층	719-8180	719-8811	
10	부천노인복지센터	이종화	부천시 부흥로 256 301호	613-7002	613-7004	
1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형철	부천시 원미로 202	653-6131	653-6856	
1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부천시 계남로 336	654-0664	668-0077	
13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승주	부천시 신흥로 53번길 38	663-9577	662-9599	
14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박종현	부천시 계남로 336	661-3030	232-1949	
15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명순	부천시 상오정로 10	679-2900	679-2924	
16	부천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권치영	부천시 부일로 406 KT부천지사 3층	668-4107	656-4105	
17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부천시 경인로 73 소사어울마당 3층	347-9534	347-4416	
18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상봉	부천시 성오로 172번길 오정어울마당 5층	683-9290	683-9291	
19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1층	667-0261	666-0262	
20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호민	부천시 역곡로 367	670-1100	681-0799	
21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권우	부천시 부천로 342	671-2500	671-0230	
22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경희	부천시 소항로 101 KT상품센터 내	327-2866	327-2867	
23	부천헤림요양원	이현웅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66-7990	614-0111	
24	부천헤림요양원	임명호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66-7990	614-0111	
25	부천헤림직업재활시설	권미영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11-7994	661-3949	
26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조재일	부천시 중동로 358 수향빌딩 4층	322-1203	653-4092	
27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부천시 삼작로 52	323-3162	324-9892	
28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부천시 석천로 16번길 50 상동어울마당	652-0420	655-0420	
29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0	349-3100	349-2068	
30	소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강영선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0	349-9192	349-9196	
3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	부천시 도약로 146 덕유마을내	325-2161	326-0502	
32	십곡동종합사회복지관	채희성	부천시 장말로 351번길 9 십곡1동주민지원센터 3층	612-0726	612-0727	
33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천경희	부천시 성오로 149번길 18	677-0108	677-0107	
34	은가람 빌	김은희	부천시 안곡로 194번길 14	343-4398	345-4398	
35	(주)나눔과돌봄	김경옥	부천시 석천로 184번길 16 3층	323-9264	323-9972	
36	(사)부천희망재단	정인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4층 403호	321-9123	321-9134	상임이사 김범용
37	(사)위드프렌즈	배영옥	부천시 은성로 68번길 22-12	346-9077	347-2540	
38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이옥녀	부천시 중동로 386번길 302호	323-2472	323-2972	
39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부천시 길주로 392번길 28	216-0223	031-622-9199	
40	해밀도서관	이상희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4	650-4600	612-2949	

◆ 2022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신규회원 ◆

41	샘물자리	정현주	부천시 부천로 342 5.6층	662-2755	662-2754	
----	------	-----	------------------	----------	----------	--

MEMO

MEMO

